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679

발의연월일: 2022. 7. 27.

발 의 자:정희용・구자근・김상훈

김영식 · 김예지 · 김희곤

배현진 · 송언석 · 이채익

임이자 · 정우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금에 대하여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각종 기부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부분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15(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기부 참여율이 감소추세에 있으므로 기부활동을 장려하고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부금 세액공제의 한도를 상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 0%로,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에서 35% 로 각각 상향하여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4항). 법률 제 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00분의 15"를 "100분의 20"으로, "100분의 30"을 "100분의 35"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부금의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 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	4
는 제외하되, 제73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	
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	
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	
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	
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	
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	
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	
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u>100분의 15</u> (해당 금액	<u>100분의 20</u>
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u>100분의</u>
<u>30</u>)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제61	<u>35</u>
조제2항에서 "기부금 세액공제	
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	
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	

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게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

- 1. · 2. (생략)
- ⑤ ~ ⑪ (생 략)

,	
1. • 2. (현행과 같음)	
⑤ ~ ① (현행과 같음)	